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일본 및 도이치기업, 국제적 가격 카르텔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 벌금 부과 예상

일본기업인 일본전극주식회사(Nippon Electrode Company Ltd.(NDK)) 및 도이치기업의 VAW Carbon GmbH(VAW)는 탄소전극 블록에 대한 가격카르텔의 국제적 공모에 참여하였다 하여 유죄를 인정 총 144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했다.

일본 시즈오카(동경 교외)에 소재한 NDK 및 도이치 Grevenbroich에 소재한 VAW는 익명의 공모자와 함께 1996년 2월경부터 1997년 12월까지 탄소전극블록산업에 대하여 경쟁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공모를 했다 하여 금일 미국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각각 제소되었다. NDK는 45만 달러의 벌금, VAW는 99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다.

탄소전극블록은 우수한 전도성, 내열성 및 내약 특성 때문에 미국 및 기

타 지역에서 알루미늄의 제련설비 또는 전해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건은 미국기업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독점금지국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James M. Griffin 독점금지국 형사 집행담당차장은 언급했다.

NDK 및 VAW는 다음 행위에 의해 가격담합을 실행하였다.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탄소전극블록의 가격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 및 유럽에서의 회담에 참가했다 ;

회담에서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탄소전극블록의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의 가격설정과 이에 대한 인상 및 유지를 행하기로 합의했다 ;

합의와 결정내용의 준수를 감시 및 강제하는 목적으로 판매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

2001년 3월 오하이오에 소재한 Anchor Industrial Products사는 본 건 공모에의 참가에 관하여 유죄 답변을 한 최초의 기업이다. Anchor사는 2001년 4월 6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NDK 및 VAW는 법인에 대하여 최고 1,000만 달러의 벌금을 정한 셔먼법 제1조에 위반되었다. 벌금의 최고액은 범죄로 얻은 이익의 2배액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2배액이 법률에서 정해진 벌금의 최고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금액까지 인상된다.

금일의 제소는 독점금지국 필라델피아 사무소 및 필라델피아 연방수사국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진행중인 수사의 결과이다.

2002. 4. 1. 법무부 독점금지국 발표

FTC, 「오렌지북」에의 부당한 개재에 Biovail Corp.사에 동의명령을 행할 방침

FTC는 금일 제약회사 Biovail Corp.에 대해서 동사가 자사 branded drug인 Tiazac과 generic drug의 경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배타적 특허 라이선스를 위법으로 취득한 후에, 당해 특허를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오렌지북」에 부당하게 개재했다 하여 심판개시 결정 및 동의명령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의 심판개시결정서에 의하면 Biovail사는 Tiazac 및 Tiazac의 generic판의 시장에 있어 자사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배타적 특허라이센스를 불법으로 취득했다. Tiazac은 고혈압 및 만성적 가슴통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이다. 취득한 라이센스는 Tiazac의 유효성분의 독특한 조성에 관한 특허에 관련된 것이다. 심판개시결정서에서 Biovail사는 취득한 특허를 오렌지북에 부당하게 게재함으로써 또한, FDA에 대하여 오인을 초래케 하고 이에 대한 독점을 유지코저 하였다는 것이다.

Biovail사는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타적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의명령안은 Biovail사가 generic판의 Tiazac 시장에서의 침입을 법적으로 늦추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도 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동의명령안은 또한 Biovail사가 장래에도 오렌지북에 특허를 부당하게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렌지북에 게재되기로 예정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FTC에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TC는 2년간 미국 제약시장에의 경쟁업자의 침입을 늦추기 위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또는 직접 금전의 지불을 했다고 해서 brand약 및 generic약의 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왔다. Biovail사의 반경쟁적 행위를 배제하는 금일의 동의명령안은 FTC가 문제된 오렌지북의 게재 이용과 generic약의 침입을 부당하게 늦추기 위한 특허위반소송, 또한 반경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사 특허의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 밖의 책략에도 관

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장래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는 엄격한 화해내용이다. 본 건이 수직적협정, 배타적 특허라이센스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반경쟁적인 수직적제한 및 합병의 추구에 우리가 의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Joseph J. Simons FTC 경쟁국 과장은 언급했다.

2002. 4. 23. FTC 발표

미국과 캐나다 정부, 텔레마케팅 사업자 공동 규제키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17개 미국과 캐나다의 법집행기관 및 소비자보호기관들은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캐나다의 텔레마케팅 사업자에 대한 규제활동을 펴서 사업자들의 위법한 사업활동을 금지시키고 소비자들의 피해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하기로 했다. 「미국과 캐나다 법집행기관 간의 공조는 기만적인 사업자들의 활동을 저지시킴에 그들의 책략을 방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Timothy J. Muris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법집행에 관한 국경을 초월한 공조활동은 텔레마케팅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 경쟁국의 위원도 「국경을 초월하여 캐나다 경쟁국, 기타 관련 정부기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미연방 우편 조사국 및 FBI가 공조활동을 벌임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텔레마케팅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국 기관들간에 이루어질 협조에는 증거확보, 피해자들의 진술 수집 및 민·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등이 포함된다. 기만적 행위로서 다루어지는 것으로는 불법 국제 복권사업, 선불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피해보호사업 등이 있다.

불법 국제복권사업이란 주로 노인층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사기 사업자들은 이들에게 당첨이 「보장된」 복권이 라고 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당첨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각종 세금 및 제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몇 백 달러에서 몇 천 달러를 미리 송금해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 복권을 매매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다루어지고 있다.

선물신용카드사업이란 미리 통상 수백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저리의 대출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이 카드를 발급 받은 소비자들은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거나 혹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적힌 소형 팜플렛이나 은행 목록 등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신용카드 피해보호사업이란 그 사업자들이 주로 소비자들을 위협하거나 기만하여 아무 가치도 없는 「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카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책임한도를 규정된 범이 변경되었다고 말하면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절취당한 경우에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속인다. 또 어떤 경우에는 컴퓨터 해커들이 신용카드 번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거나 컴퓨터의 버그

(bugs)로 인해 신용카드 계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 백 달러에 이르기도 하는 “보험”을 판매한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책임 한도는 연방법에 의해 50달러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모든 사기행위는 연방거래위원회법, 텔레마케팅 판매규정 및 캐나다 연방법 및 각 주법에 위반된다.

2002. 6. 10. 연방거래위원회

합병지침 제정 20주년 맞아

1982년에 제정된 합병지침(Merger Guidelines)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에 대한 학술발표 등 각종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Charles A. James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은 “Giant Steps”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축하연설을 하였다.

1959년 5월 4일 34세의 John Coltrane은 자신이 작곡한 Giants Steps라는 곡을 녹음하기 위해 맨하튼의 한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멜로디가 다양하게 나뉘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수학적으로 매우 정확한 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Giants Steps는 예전의 새로운 형식들을 모두 종합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Charlie Parker의 즉흥연주, Miles Davis의 추상적 선율, Charles Mingus의 리드미컬한 파워 그리고 Thelonious Monk의 잘 다듬어진 관현악을 모두 합쳐 놓은 Giants Steps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다음 스텝으로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Sonny Rollins는 Coltrane이 Giants Steps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몇 년 동안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Giants Steps는 현대 재즈음악을 바꾸어 놓았으며, 중요하고 혁명적인 색소폰 연주곡 중의 하나로서 많은 매니아들로부터 40년이 넘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놀라운만한 재즈곡들과 뛰어난 연주들이 있었지만 이 분야에서는 Giants Steps를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John Coltrane 자신도 남은 여생동안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창조해보려고 노력하였지만 Giants Steps를 능가하는 것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정도였습니다.

독점금지법 예술과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982년 Bill Baxter의 합병지침은 독점금지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현대 재즈에서의 Giants Steps에 비유할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1982년의 지침은 공표 될 당시에는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으며, 합병, 조인트 벤처 및 기타 과거 20여년 동안의 구조적 이슈들에 대한 독점금지적 분석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쟁당국도 정책 문건을 통해서 이 지침의 제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합병지침의 제정 20주년과 함께 이 지침의 제정에 책임을 맡았던 독점금지국장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문건들을 모두 축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침이 공표된 1982년 6월 이래로 지난 20년을 회고해 보면, 이 지침에

기준하여 합병 정책을 평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업들의 문서 또는 동일한 사업자단체에 속하는 특정 상품의 제조과정인지 여부 등 전체적인 주변 요소들에 기초하여 시장 획정을 했는가? 우리는 실제로 개별 기업들의 현실 시장점유율은 고려하지 않은 채, 4개 또는 8개 기업의 집중도를 기준으로 하여 결론을 내렸는가? 법원은 실제로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 이하인 결합 기업의 합병에 대해서 기소를 유지했는가? 합병 정책이 잠재적 경쟁에서 중요한 진입요건을 도외시하지는 않았는가? 합병의 효율성이 좋은지, 나쁜지, 중립적인지, 잠재적으로 해로운지 등을 실제로 검토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놀랍게도 이러한 개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정책에 반영된 단순한 구조적 접근을 넘어서는 이러한 결정이 그 당시 매우 논란이 되었다는 점은 더욱 놀랄만합니다. 먼저, Baxter의 지침은 당시 독점금지 분야를 지배했던 수십 명의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독점금지국장을 임명한 레이건 정부에 의해 지침이 공표되면서, 1982년 지침은 레이건 법무부에 의한 일방적인 무장해제법 또는 회사합병을 위한 체크목록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각 주의 법무부장관들은 이 지침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 지침의 방향과 반대인 지침을 즉각적으로 제정했습니다. 심지어 독점금지 변호사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관념에 기초하여 합병지침을 비난하면서, 관련시장 획정을 위한 “가상의 독점자” 테스트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들은 질문하기를 어떻게 이러한 고도의 이론적 질문들에 대하여 실제 합병 조사과정에서 대답할 수 있겠느냐며 따졌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Baxter의 지침은 순수한 시장구조를 넘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합의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82년 지침이 갖는 강점 중의 하나는 판례법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은 새로운 경제 학설을 종합했다는 점입니다. Bill Baxter는 독점금지 개념으로서 “시장 진입”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지 합병의 경쟁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성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Baxter의 지침은 실정법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즉시 이 지침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합병지침은 연방대법원에서 General Dynamics 판결 이후 합병사건에서 이송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 효력이 없는 정책을 보완하는 데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Baxter 지침의 “Giant Steps”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침은 개별사건에서 정책의 입장을 매우 많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은 합병에 관한 연방 정책을 경제적 테크닉과 증거들로 무장한 신고된 합병의 경쟁효과를 단순하게 분석하려고 시도하는 단순한 구조 검토에서 변화시켰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지침은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개정 때마다 기본적인 Baxter 지침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었던 1992년의 Jim Rill의 개정에서도 10여년전에

제정된 Baxter의 지침에 비추어 시장 확정, 진입장벽 및 경쟁의 효과를 구체화했을 뿐이므로 “human Steps”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 6. 10.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

법무부 독점금지국, 고객 기망을 공모한 기업을 기소

연방법무부는 그의 고객들 중 하나를 사칭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메일과 유선으로 사기행위를 한 혐의로 텍사스에 위치한 폐수처리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를 기소했다. 법무부는 Pumps, Valves & Equipment Inc. (이하 “PVE”)를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했다. 이 회사는 휴스턴과 텍사스에서 The Scruggs Company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는 일리노이주 Aurora에 있는 The Henry Pratt Company를 기망하는데 가담하기 위한 것이었다. The Henry Pratt Company는 공장이나 원자력 장치를 비롯한 각종 산업설비장치에 폐수처리를 위한 장비를 제조·공급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PVE는 이 회사로부터의 사업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 회사의 고당시 임원이었던 자에게 9만 달러가 넘는 돈을 제공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PVE는 1996년 초반부터 1998년 5월까지 이러한 공모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회사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으로부터 성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이로 인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가격책

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의 형사부를 맡고 있는 James M. Griffin 부국장은 말했다.

이번 기소는 독점금지국의 애틀랜타 사무소와 애틀랜타 연방수사국이 공동으로 폐수처리설비장치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벌인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PVE는 18 U.S.C. 371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경우 한 회사당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액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배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2002. 5. 31.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

일본

공정위, 2001년 독점금지법상 기업결합신고 등의 동향 발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도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 동향을 발표했다. 신고수리 건수를 살펴보면, 합병의 신고수리 건수는 127건으로서 모두 일본 국내회사간의 합병이었다. 분할의 신고수리 건수는 20건이었고, 영업양수 등의 신고수리 건수는 195건이었다. 이 중에서 국내회사로부터의 영업양수가 193건이고, 외국회사로부터의 영업양수가 2건이었다.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의 신고는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다. 분할(공동신설분할 및 흡수분할) 신고제도는 2000년 5월 법개정에서 신설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

고 있다.

1. 행위별 분류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의 신고수리 건수를 행위별로 분류하면, 합병에 있어서는 전부가 흡수합병이며 신설합병은 없었다. 분할에 있어서는 총 20건 중에서 5건이 공동신설분할, 15건이 흡수분할이었다. 영업양수 등에 있어서는 총 195건 중에서 181건이 영업양수였고, 14건이 영업상 고정자산의 양도로 집계되었다.

2. 업종별 분류

2001년도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의 신고수리 건수를 업종별로 보면, 합병의 경우 도·소매업이 32건(전체의 25.2%), 서비스업이 25건(19.7%)이고, 제조업이 23건(18.1%), 금융·보험업이 21건(16.5%)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는 기계업 6건, 화학·석유·석탄업이 5건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2001년 합병 신고처리 건수 중에서, 행위후 총자산액이 1000억 엔 이상의 신고는 24건이며, 금융·보험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할 신고수리 건수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6건(전체의 30%), 금융

·보험업과 운수·통신·창고업이 각각 4건(20%)이고, 도·소매업이 3건(15%)의 순이다. 제조업 중에는 기계업이 4건, 화학·석유·석탄업이 2건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분할 신고수리 건수 중에서 신설회사 또는 피승계회사의 총자산이 1,000억 엔 이상인 신고는 7건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양수 등의 신고수리 건수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58건(전체의 29.7%), 제조업이 53건(27.2%)이고, 서비스업이 30건(15.4%), 금융·보험업이 15건(7.7%)의 순이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업이 21건, 화학·석유·석탄업이 13건이다. 영업양수 등의 신고수리 건수 중에서 당해 행위후 총자산이 1000억 엔 이상의 신고는 60건인데, 이 중에서 제조업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3. 형태별 분류

한편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의 신고수리 건수를 형태별로 보면, 합병의 형태별 건수는 196건인데, 이 중에서 수평결합이 126건(전체의 64.3%), 혼합결합이 54건(27.5%), 그리고 수직결합이 16건(8.2%)이다.

이 집계는 소멸회사의 건수를 기준

으로 본 것인데, 소멸회사에서 본 건수란 가령 3개 회사 합병의 경우는 2개 회사 합병이 2번 일어난 것으로 간주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 수평합병이란 당사회사들이 동일시장에서 동종의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수직합병이란 당사회사가 구입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혼합합병은 수직합병과 수평합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합합병은 다시 세 종류로 나뉘는데, 지역확대형 혼합결합은 동종의 상품 또는 용역을 서로 다른 지역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간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양수 등을 말하며, 상품확대형 혼합결합이란 생산 또는 판매면에서의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경쟁관계는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간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양수 등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순수형 혼합결합이란 사업적 관계가 없는 회사간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양수 등을 말한다.

한편 기타 합병에는 조직변경, 권면액의 변경 및 분리독립이 포함된다. 조직변경이란 합병·합자·유한회사의 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하거나 또는 주식회사의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고자 행하는 합병, 분할 또는 영업양수 등을 말한다. 권면액의 변경은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금액을 변경할 목적으로 행하는 합병, 분할 또는 영업양수 등을 의미한다. 분리독립이란 회사가 자신의 영업 등의 일부를 분리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전부를 취득해 국내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새 회사가 행하는 해당 영업양수 등을 말한다.

<합병의 형태별 상황>

(단위: 건, ()안은 비율)

연도	수평합병	수직합병	혼 합 합 병				기타합병	합계
			지역확대	상품확대	순 수	소 계		
2000년	141 (63.0)	16 (7.1)	16 (7.1)	39 (17.4)	12 (5.5)	67 (30.0)	0 (0.0)	224 (100.0)
2001년	126 (64.3)	16 (8.2)	11 (5.6)	28 (14.3)	15 (7.6)	54 (27.5)	0 (0.0)	196 (100.0)

분할의 형태별 건수는 37건이며, 수평관계가 30건(81.1%), 혼합관계가 4건(10.8%) 그리고 수직관계가 3건(8.1%)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영업양수 등에 대한 형태별 건수는 199건인데, 수평관계가 138건(69.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혼합관계가 46건(23.1%), 수직관계가 15건(7.5%)의 순이다.

2002. 5. 29.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적정한 전력 거래에 관한 지침」 공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1999년에 전력의 부분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개혁과 병행하여 「적정한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1999년 12월)을 작성하여 공표한 바 있다.

그 후 추부전력(中部電力) 및 쿠우슈우전력(九州電力)은 각각 2001년 11월과 2002년 3월에 독점금지법 위반혐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건에서 독점금지법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행 지침에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나타남에 따라 「전력의 부분공급 등과 관련되는 독점금지법상의 사고방식」을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그러나 전력의 부분자유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상담(경제산업성으로부터의 연락을 포함)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정한 전력거래에 관한 현행 제도를 전력회사, 신규참가자 및 수요자들을 위

해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경영의 자주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보완된 「적정한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방면의 의견을 구하기로 하였다.

보완된 「적정한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은 독점금지법을 관할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하에 정리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계로부터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이 지침을 개정·보완하여 공표할 방침이다.

2002. 6. 3. 공정거래위원회

독 일

■ 연방카르텔청, 전력선망 소유자인 Bewag사에 대해 조사 착수

연방카르텔청은 스웨덴의 Vattenfall 콘체른의 계열회사이면서 독일의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는 Bewag 주식회사(이하 "Bewag")에 대하여 전력선 망(network)소유자로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Bewag사는 전력공급업자에게 자신의 전력선망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Ulf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번에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앞으로 특정한 사업자단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망소유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연방카르텔청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화로 인한 이득은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5월 말에 행해진 에너지경제법(Energiewirtschaftsgesetz)의 개정 에 의해 사업자단체의 합의는 "선량하고 전문적인 행위"로서 추정된다.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만 여전히 경쟁제한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러한 규정이 에너지분야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Bewag사가 베를린과 부란덴부르크에서 가계용 및 영업용의 저전압과 산업용의 중전압을 제공하는 독점적 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서 Bewag사는 가령 중전압 부문에서는 다른 망에 비해서 25%나 높은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2. 5. 29. 연방카르텔청

■ 연방카르텔청, Viterra Energy Services사의 주식취득행위를 금지

연방카르텔청은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E.ON 그룹의 계열회사인 Viterra Energy Services 주식회사가 Minol Messtechnik W. Lehmann사와 Brunata Wärmemesser Werner Lehmann사 및 Brunata Wärmemesser사의 주식취득 행위를 금지했다. 이 회사들은 소비용 난방 및 온수 사용을 측정하여 요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

Ulf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은 “연방 카르텔청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Techem 주식회사와 Viterra Energy Services사는 이미 합병 이전에 이 시장에서 공동으로 지배적 지위에 있다. 합병을 하게 되면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0%에 육박하게 되므로 그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소규모 회사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또한 고도로 시장이 집중되므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식취득 금지의 이유를 밝혔다.

2002. 5. 27. 연방카르텔청

영 국

OFT, 공급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공정거래청 (Office of Fair Trading; OFT)은 문(door) 공급업자가 불량상품을 제조·공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영국 Surrey에 위치한 문 제조업자인 Mark Talbot씨는 1982년의 상품및서비스의공급에관한법(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금지규정 (Stop Now Regulation)을 이행하겠다는 서명을 했다. 또한 그는 1973년의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제3장에 따라

보험에 가입을 했다.

OFT가 소비자들로부터 신고받은 바에 따르면, Mark Talbot씨의 회사는 품질이 불량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거나 또는 그가 설명한 것과 다른 제품(문)을 공급했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달을 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설치를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2001년 5월까지 그가 운영했었던 회사인 Specialist Doors and Windows Ltd.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사업자들의 보험 가입을 환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목적에 맞을 뿐만 아니라 설명과 부합하고 적정하게 제작된 양질의 상품을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OFT의 책임자인 John Vickers는 말했다. OFT는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경쟁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영국 전역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영국에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가 있다. 이 기관은 1998년의 경쟁법(Competition Act)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1999년 4월 1일자로 기존 독점 및 합병 위원회(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MMC)를 대체했다.

경쟁위원회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 MMC의 역할이었던 것으로서, 영국내 다른 경쟁관련 규제기관들의 독점, 합병 및 공기업의 경제적 규제에 관한 문의에 대한 조사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항소기능이다. 새로 설립된 항소법원 (Appeal Tribunal)이 반경쟁적 합의나 시장지배적지위와 관련된 법 위반사건에서

공정거래청이 기타 공기업 규제기관들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의 역할을 한다.

경쟁위원회는 위원들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Derek Morris 박사가 현재 책임을 맡고 있다. 위원회에서 항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항소법원의 책임자는 Christopher Bellamy이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임이며, 이들 중 2명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다.

경쟁위원회는 항소패널, 조사·보고패널 그리고 전기, 통신, 수도 및 신문에 관한 전문가패널로 이루어져 있다. 항소패널의 구성원들은 금지된 결정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다룬다. 기록패널에서는 합병, 독점 및 규제관련 자료들을 조사하는 기능을 한다. 신문패널에서는 오로지 신문과 관련된 사건들만을 다룬다.

2002. 5. 22. 공정거래청